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문화1771-21-545 (전화번호 725-2154)		관할구장 부시장	4	조 7 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2.11.				
보존연한					
보조기관	부시장	전결/	협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결재 1982.11.18 부시장 법무담당관 심사필                 </div>	
	내부국장	<i>[Handwritten Signature]</i>	82.11.19		
	문화과장	<i>[Handwritten Signature]</i>	고시제 468 호		
기안책임자	문화재계장		82.11.		
경유	국안참조	발신	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접수 1982.11.18 서울특별시 문화재관                 </div>	
수신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고시				
제 1 안					
수신 내부 결재					
제목 동 권					
1. 82.11.3. 개최한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 문화재보호법 제 54조외 2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 6조외 규정의 외거 다음과 같이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고 동 제 8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7조에 외거 별안과 같이 시행호저 합니다.					
3. 지정내용 (지정일자: 82. 11. 13)					
종류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소유자	
지방유형문화재	제 49호	봉천동 마애미륵불	관악구 봉천동 산 4외 2	국 (문교부)	
"	제 50호	양호안공신도비	도봉구 양화동 산 63외 1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라솔리 470	발송
지방기념물	제 5 호	손계정월계관수	중구 만리동 2가6-1	안민용 외 17명 학교법인 양정외수	

정직 작성 창조

## 제 2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 지정 통보

1. 귀하(교)께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문화재  
보호법 제 54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 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정내용 : 제 1 안 3항 이기시행

첨부: 지정서 1부. -끝-

수신처: 중구만티동 2가6-1 학교법인 양정외숙

경기도양주군주내면만송리 470 안민용외 17명

서울중로구세종로 77 본교부장관

## 제 3 안

수신 문화공보부장관

참조 문화재관리국장

제목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 지정 통보

1. 82.11.3.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였기 보고합니다.

2. 지정내용 : 제 1 안 3항 이기시행

-끝-

## 제 4 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처 장관

제목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 지정 통보

1. 문화재보호법 제 54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보호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를 지정 고시

하얏음을 통보하오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내용 : 제 1안 3항 이기시행 -끝-

수신처 :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구획정리과, 건축지도과,  
재개발과, 공원녹지과

제 5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통보

1. 문화재보호법 제 54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를 지정 고시 하얏음을 통보하니

2. 보호관리에 관련되는 미등과및 관할 동사무소에도 통보하여 관계공부에 기록 정리될수 있도록 조치할것이며 향후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 지정내용 : 제 1안 3항 이기 시행 -끝-

수신처 : 중구, 도봉구, 관악구(총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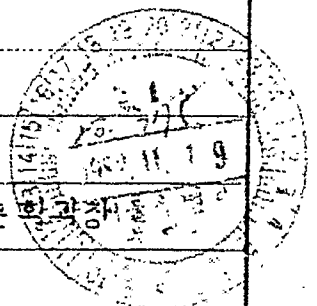
제 6 안

수신 공보관 발신 문화관광부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별첨 고시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를 지정하였기 당해 자산 소유자및 관리자에게 통지보자 시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2부.. -끝-



제 7 안

수 신 총무처장관

제 목 관보 게재 의뢰

1. 별첨 고시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분화재를 지정하였기 당해  
재산소유자및 관리자에게 통지코자 관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첨 부: 고시문 2부. -끝-





고 시 (안)

제안번호	1982. 11. 13	기	호
제안자	행정안전부	법	정
709	정	이	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 54조의 2 및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제 6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외곽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를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보호조례 제 8조  
 및 동시행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외곽 <sup>이들</sup> ~~이들~~ <sup>이들</sup> 고시한다.

1982. 11. 13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 지정목록

종	지정번호	명	소	소
별		칭	재	유
			지	자
지방유형 문화재	제 49호	봉천동 마애미륵불	관악구 봉천동 산 4의 2	국 (문고부)
"	제 50호	양표 안공신도 비부묘소	모용구 방학동 산 63-1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관동리 470 안민용 외 17명
지방기념물	제 5호	손기정 율계관수	중구 만리동 2가 6-1	학교법인 양정외숙

제 호

지방문화재지정서

명 칭 地方有形文化財 第49号  
奉天洞 磨崖 弥勒像

수 량 1 坐

위 문화재를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로  
지정함

1982 . 11 . 13 .

서울특별시장

인

270×N358 (특수용지1209.㎡)

소유자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년월일	기록인
국(문교부)	종로3세종로 117 관악구 봉천동 산 4-2		

(변경 사항)

소유자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년월일	기록인

※ 주의 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철회하고 신고할것

- 1 지방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때
- 2 지방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 되었을때
- 3 지방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때

지방문화재지정서

명 칭 地方有形文化財 第50号  
良孝安公神道碑 附墓所

수 량 神道碑 1基 墳墓 2基 墓碣碑 2基  
石人像 4基 床石 2基

위 문화재를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로  
지정함

1982 . 11 . 13 .

서울특별시장

①



소유자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년월일	기 록 인
안민용 외 17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470 도봉구 방학동 산 637		

(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년월일	기 록 인

※ 주의 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철회하고 신고할것

- 1 지방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때
- 2 지방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때
- 3 지방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때

제 호

지방문화재지정서

명 칭

地方記念物 第5号  
孫基禎 月桂冠 樹

수 량

1 株

위 문화재를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로  
지정함

1982 . 11 . 13 .

서울특별시장

인

370×X358 (특수종지120g/㎡)

소유자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년월일	기 록 인
학교법인 양정의숙	중구만리동2가6-1	중구만리동2가6-1	

(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년월일	기 록 인

※ 주 의 사 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첨부하고 신고할것

- 1 지방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때
- 2 지방문화재의 소유자의 실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때
- 3 지방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때